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합52145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변론 종결 2019. 10. 16.

판결 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89,420원 및 그 중 222,191,436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651,5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20,651,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121,863,08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21,863,0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금액 242,2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4.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 (사전구상)

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D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상환범위)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3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하며, 율율과 계산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5. 2.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4.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을 2018.6. 29.까지로 변경하였다가 2018. 6. 29. 다시 2019. 6. 28.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8. 10. 30.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8. 12.4.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9. 3.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금 217,600,000원 및 이자 4,591,436원 합계 222,191,436원(= 217,600,000원 + 4,591,436원)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97,984원을 지출하였다.

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1.부터 연 10%이다.

사. 피고 B은 2018. 12. 5.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한 아파트매매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접수 제44450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다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222,191,436원과 채권보전비용 197,984원 합계 222,389,420원(= 222,191,436원 + 197,9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2,191,4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10. 30.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3. 15.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7 내지 9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양구청장, 부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경남 함양군 E 전 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이 사건 부동산의 F부동산시세에 따른 매매가격 상위평균가는 3억 500만 원이었고, 이사건 토지의 2019. 7. 11. 기준 시가는 최대 15,825,600원인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2억 1,760만 원의 대출금 채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194,388,477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H조합에 대한 약 2억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가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12.5.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의 2017. 1.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과 I의 2017. 1. 2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8,451,886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 내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 내지 우선변제권의 가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당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해 있는 실제의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1, 을다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7. 11. 19. 접수 제22816호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과 같은 법원 2017. 1. 25. 접수 제28536호로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08,451,886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2016. 12. 30. I과 J교회 성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금액을 308,451,886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는 105,651,523원 상당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F부동산시세에 따른 매매가격은 상위평균가 3억 500만 원, 일반평균가 3억 원, 하위평균가 2억 8,500만 원이었고, 그 중일반평균가 3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남아 있던 피담보채무액은 194,348,477원이다.

③ 피고 B은 I 과 J교회 성전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신의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금액을 308,451,886원으로 확정하되, 피고 B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I은 위 합의 이후 피고B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금액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말소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I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억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94,348,477원을 공제하면 105,651,523원이 남게 되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은,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2018. 9. 14.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가 치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통받되, 추후 피고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피고 회사의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올다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9. 14.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이 원하는 일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2018. 9. 14.부터 2018. 12.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95,651,523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업 계속을 통한 변제력 확보를 위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소유의 재산으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이 실제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 중 한 명에 불과하였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대물변제를 해 준결과가 되었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회사나 피고 B이 변제력을 확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피고 B 본인신문결과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C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경로되어 있던 G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이후인 2018. 12. 14.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G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경을 기준으로 F부동산시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일반평균가가 3억 1,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94,348,47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20,651,523원(= 3억 1,500만 원 - 194,348,477원)과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222,389,420원 중 적은 금액인 120,651,523원이 된다.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0,651,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120,651,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남준우,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84.96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 13440.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3440.3분의 46.85

끝.

